

서울대학교 학칙

[시행 2023.11.15] [서울대학교학칙 제2469호, 2023.11.15, 일부개정]



서울대학교 880-5083

제7절 특별학점취득·계절수업·공개강좌 등

제91조(특별학점 취득) ① 특별학점 취득을 위하여 교양과목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여,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교양과목학점취득 특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92조(계절수업 등) ① 하계휴가 또는 동계휴가 기간 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하계계절수업은 9학점 이내, 동계계절수업은 6학점 이내로 한다.

② 필요에 따라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93조(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) 본교에 학생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공개강좌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둘 수 있으며,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절 위탁생·특별수강생 등

제94조(위탁생) ① 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 있을 때에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위탁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이를 수여할 수 있다.

③ 위탁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95조(특별수강생) ① 각급 학위과정에 특별수강생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,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②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.